

역사 속으로 사라진 Widow Penalty 2년 내 시민권 배우자 사망해도 영주권 취득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인터뷰 일자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미만인 경우 유효 기간이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우리 부부는 2년 동안 잘 살았어요”라는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렌트 계약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사이에 사별 또는 이혼하더라도 합법 결혼임을 입증하면 시민권이 있는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글 조문경 변호사



Celina Moon-Kyung Cho _ Attorney at Law, Cho & Leigh PC
☎ 201-849-5000 Fax: 917-463-1590 www.choleighlaw.com
NJ: 460 Bergen Blvd., Suite 303, Palisades Park, NJ 07650
NY: 164-01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8

오랫동안 이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구구절절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접했다. 이 글을 쓰며 오래전 필자를 찾아온 젊은 아기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9년 초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상담을 왔다.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곧 아이도 생겼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실상 가상으로 당시 이민국에 서류 중이던 영주권 신청이 초청자인 시민권자 남편의 사망으로 자동 취소되고 졸지에 추방 위기까지 직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방법이 없냐고 묻는 말에 안타까움만 더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 없이 self-petition(독자 청원)을 허용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당시 이민법상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었다. 뉴저지 주를 관할하는 제3 연방 항소 법원에서 Robinson 케이스를 다루면서 “시민권자와 외국인과의 부부 관계는 2년의 결혼 생활이 있어야만 확고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2년이 안 되어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자 남은 외국인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소위, “Widow Penalty” 규정 때문에 홀로 된 수천 명의 배우자

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심지어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배우자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0월 28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드디어 법이 개정되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혼인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후 2년 안에 단독으로 I-360 청원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영주권 수속 중 초청인이었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별도의 서류 수속 없이 이미 접수했던 I-130 직계 가족 초청서가 자동적으로 I-360 청원서로 바뀌어 배우자 사망과 관계 없이 심사가 계속된다. 또한 초청인의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배우자를 잃은 아픔에 덧붙여 추방 위기로까지 몰아간 “Widow Penalty”가 사라진 것이다.

이민법 및 관련 규정은 굉장히 자주 바뀐다. 특히 케이스를 중시하는 영미법에서는 케이스가 곧 법이 되기도 한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법이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민법이 되길 소망한다.

2009년 초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던 미망인은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아 2010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얼마 전 시민권자가 되었다. ●